

●법무부령 제1115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6월 24일

법무부장관 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2조의2(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등) ① 법 제29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가 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2호의2서식의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물건 열람·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의3서식의 열람·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분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며,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별지 제2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2호의2서식]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물건 열람·등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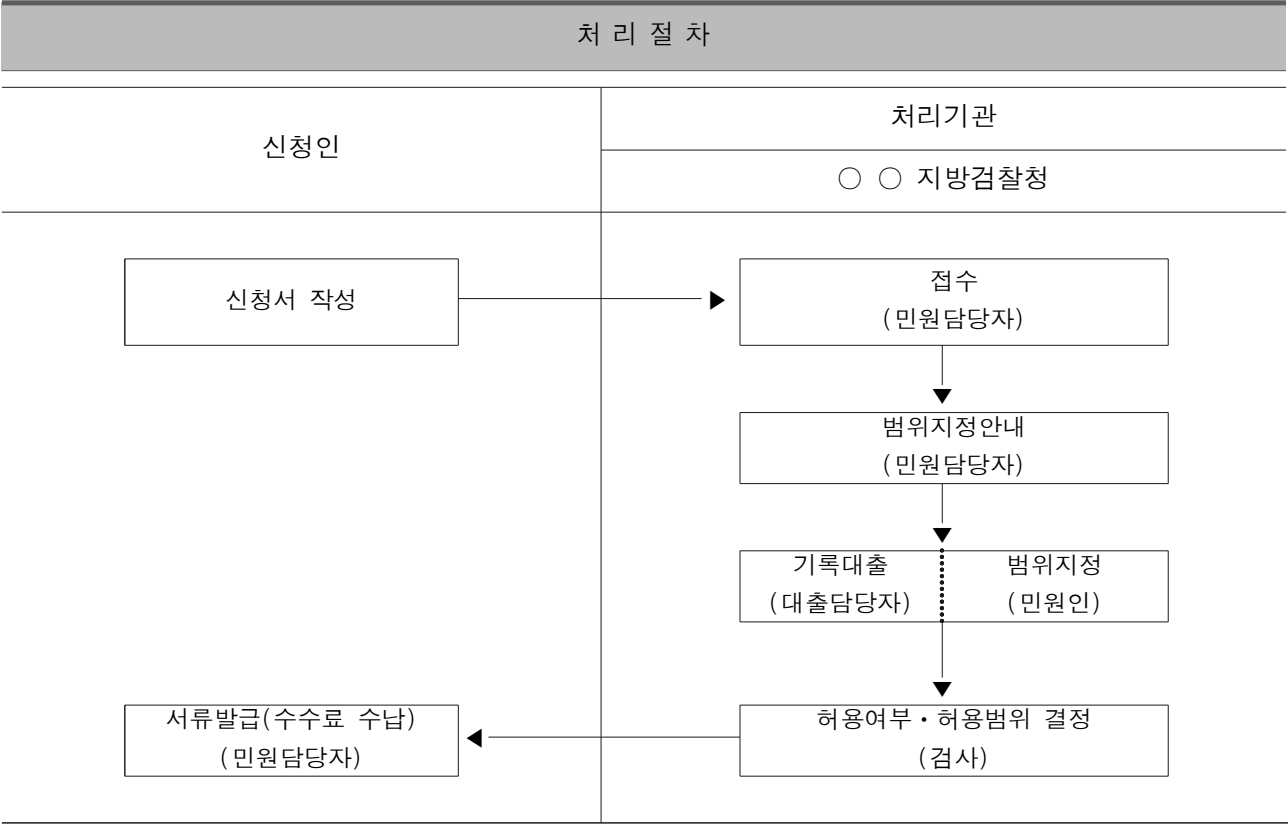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 과의 관계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의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사건	사건번호		피고인
	년 월 일 형제 호 죄 명		외 명
신청사유	☐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 피해자 등의 해당 사건 진술권 보장 (관련 사건번호 및 사건 내용 :)		
신청내용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의 열람·등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검 사 결 정	허 가	불 허 가	사용 목적 제한	조건부 허가
	㉠	㉠	㉠	㉠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의 내용

순번	서류·물건의 목록	허가 여부			비고
		허가	불허가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부허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목적 제한 또는 조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비교란에 기재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열람·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4항에 따라 귀하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가(조건부 허가) 또는 사용 목적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서류·물건의 목록 (별지순번 또는 면수)	열람·등사의 불허가(조건부 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의 사유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2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3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4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5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합니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6호)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
	그 밖의 조건부 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사유(「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3항:)

210mm×297mm

(신문용지54g/m²(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2조의2(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등) ① 법 제29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 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가 법 제266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2호의2서식의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물건 열람·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의3서

	<u>식의 열람·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u> <u>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분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며,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u>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검사가 그 신청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검사의 허가·불허가 등에 대한 관련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